



상주시의회 공고 제2011-6호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 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에고**

### **1. 개정이유**

-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된 사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용역 심의대상 및 기능 (안 제3조, 제5조)
  - ▷ 심의대상
    - ① 학술용역과제 2천만 원 이상인 사업
    - ② 종합기술용역과제 5천만 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

③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비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에정 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

▷ 기능 :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

○ 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5조 ~ 17조)

▷ 위원회 구성 (임명 및 위촉위원 9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의 임기 : 2년 (한차례만 연임 가능)

▷ 의견청취 등 :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

▷ 용역결과를 보관·관리하고 시책개발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

###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1년 11월 8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54-537-6409 FAX : 054-535-9854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 [www.sangjucouncil.go.kr](http://www.sangjucouncil.go.kr) (자유게시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붙임 입법예고 의견 제출 “양식” 참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할 곳 : (우742-905) 경북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

### 3. 조례안 전문 : 붙임참조

## 입법예고 의견 제출

☐ 의견제출

|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br>해 당 항 목 | 의견 내용 |
|-------|-------------------|-------|
|       |                   |       |
|       |                   |       |
|       |                   |       |
|       |                   |       |

☐ 의견 제출자

○ 주 소 :

○ 성 명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된 사전심사를 하기 위하여 상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나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의대상)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공사설계 용역은 제외한다.

1. 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 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5천만 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에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5조제3항에 대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하여 위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용역결과 관리) ①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활용 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② 긴급함이 필요하거나 국가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공통으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집행 시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시행 후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이 조례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